

-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審 査 報 告 書

2005. 6. 22.
제239회 임시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5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05년 6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2005. 6. 14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)

가. 제안 이유

-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단지관리 및 공단임대 사무 권한을 위탁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기업지원과 위탁사무에 “오창과학산업단지(공단 임대사무 포함) 관리 권한”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(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)

-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“오창과학산업단지(공단 임대사무 포함) 관리 권한”을 위탁사무에 추가 삼입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관리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, 수탁기관은 2005. 5. 2일 설립된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임.
- 위탁에 관한 근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두고 있으며, 검토결과, 조례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다만,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기능과 조직 등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, 위탁사무 내용이 “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권한”으로서 다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데, 구체적으로 업무위탁의 내용은 무엇이고, 어느 범위까지 위탁되는지, 그리고 위탁내용중 공단 임대사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※ 위임·위탁사무의 정의

- 사무위임 :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권한과 책임을 행하도록 하는 것임.

- 위탁사무 :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중 일부를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기관·단체·민간에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임.
- 대행사무 :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와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”로 한다.

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대상실과	일련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기업지원과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단지 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 · 청주지방산업단지 · 현도지방산업단지 · 부용지방산업단지 · 대소산업단지 · 대풍지방산업단지 · 오창과학산업단지 (공단 임대사무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부용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대소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대풍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	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, 제31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【별표】

민간위탁사무

현행				개정안					
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기업 지원과	5	○ 산업단지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		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 법률	기업 지원과	5	○ 산업단지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		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 법률
		· 청주지방산업 단지	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	제30조 제31조			· 청주지방산업 단지	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	제30조 제31조
		· 현도지방산업 단지	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			· 현도지방산업 단지	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
		· 부용지방산업 단지	부용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			· 부용지방산업 단지	부용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
		· 대소산업단지	대소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			· 대소산업단지	대소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
· 대풍지방산업 단지	대풍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	· 대풍지방산업 단지	대풍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				
							· 오창과학산업 단지 (공단 임대사무 포함)	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	

관계 법령 발췌

【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】

제30조 (관리권자등)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
2.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
3.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리권자
2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
3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
4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
5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(일반지방산업단지·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한한다)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

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.

④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

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.

제31조 (산업단지관리공단등)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산업단지관리공단(이하 "관리공단"이라 한다)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(이하 "입주기업체협의회"라 한다)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(이하 "관리공단등"이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⑤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2.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
3.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4.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

⑥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

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⑦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무관청"은 "관리권자"로 본다.

【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】

제37조의2 (관리업무의 위탁)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